

2026년도 제3회 전북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전북지방우정청 주관 2026년도 제3회 별정우체국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채용직급 및 인원

직 급	채용(근무)우체국	인 원	업무내용
사무원	정읍덕천	1명	○ 우편 접수 및 금융 창구 업무 ○ 우편·예금·보험 마케팅활동 업무 등
	무주부남	1명	
	고창공음	1명	

※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하며, 신분은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국가공무원이 아님

2. 근거 법령

- 가. 별정우체국법 제8조
- 나.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조
- 다.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관리지침

3. 응시자격 및 요건(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가~바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응시 가능함)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별정우체국법 제8조2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 60세 미만
- 라.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마. 공고일(2026.6.15.)현재 주민등록상 전라북도 지역 거주자
- 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필수1·필수2 모두 충족)

구분	필수1	필수2
사무원	정보처리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전자계산기사, 전산회계운용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

- ※ 전산회계운용사 자격증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것에 한함
- ※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면허
- ※ 국가기술자격법, 하위법령에서 인정하는 자격증과 법령에서 인정하는 상위자격증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및 서류구비여부 등 형식요건을 심사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의해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관련분야 경력, 無 음주운전 경력, 자격증)
 - ※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공 통】

-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 취득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의 경력을 인정

【세부사항】

관련분야 경력	○ 채용 직급과 같은 직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사무원)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의 창구업무 * 금융기관의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無음주운전 경력	○ 운전경력증명서 상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자 * 음주운전 경력을 확인(감점식)
자격증	○ (사무원) 재경관리사, 자산관리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관련분야 경력 요건 기본사항 >

-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의 경력을 의미
 - 임용예정 직위 주요업무와 관련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가 제출되고 **담당 업무·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예_주00시간·직급(직위) 등이 정확히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제출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이해도를 구술 평가

- | | |
|---------------------|----------------|
| ①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 우편상식 및 금융상식에 관한 이해도 평가는 면접위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자료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사업분야(우편, 예금, 보험)의 내용을 사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서류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6. 6. 22.(월) ~ 2026. 6. 25.(목)**
 -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까지 **익일특급 등기우편** 접수분에 한함
- 접 수 처 : 전북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효자동2가)
-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익일특급 등기우편** 제출
 - ※ **직접제출은 업무시간 중(09시~18시) 가능(단, 점심시간 12:00~13:00제외)**
 -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반드시 **익일특급 등기우편 접수**)**
 - ※ 우편접수시 봉투 겉면에 「**별정우체국직원 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기재
 - ※ 우편접수시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배부(응시번호는 휴대폰으로 문자 전송)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중 미제출 또는 기재 착오 및 누락이나 합격자발표 미확인·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 자	2026. 7. 1.(수)	2026. 7. 9.(목)	2026. 7. 15.(수)

- ※ 전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jb/>)의 채용공고란에 게시
- ※ 면접시험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게시
-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7. 제출서류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가. 응시원서 (5,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1부 **【붙임1】**
 -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 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워드작성 가능) **【붙임2~4】**
-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라. 응시자격요건 관련 자격증명서 1부
- 마.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인터넷 발급) 1부
 - ※ 면허취득일 이후 운전 **전체경력 현황이 확인 가능한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단, 운전면허경력 란에 **면허취득일자는 반드시 표기**되도록 조회된 증명서 제출
- 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사. 병역사항이 기재 된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 및 주소 변동 이력, 병역사항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발급
→ 초본 교부 신청시, 신청내용을 「**전체포함**」으로 선택하여 발급할 것

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5】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붙임6】

차. 경력증명서 1부 【붙임7】 (해당자에 한함)

※ 기관·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로 기관의 증명이 있고 객관적 확인이 가능해야 함

8. 후보자의 채용

가. 채용예정시기 : 최종합격자 서류 검증, 이상 유무 확인 후

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와 해당 우체국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면접시험 응시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9. 보수수준

○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에 따라 책정

※ 별정우체국직원은 일반우체국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과는 달리 공무원신분이 아니며, 초임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 초임과 비슷한 수준임

10. 기타 사항

가.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보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재공고(변경공고)합니다.

마.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전자우편(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바.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붙임8】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까지

아. 제출된 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063-240-37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